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11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김준형 · 서왕진 · 신장식
이해민 · 이재강 · 박은정
정혜경 · 박지원 · 권칠승
김재원 · 백선희 · 강경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접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

이에 접촉신고의 대상을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통신에 한정하는 한편,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하고, 북한주민 접촉 이후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절차적 규율은 유지하면서도 접촉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확보하여,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북한의”를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북한의”로, “접촉하려면”을 “직접 접촉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한 사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접촉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한 사람: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후
2. 제1항 단서에 따른 접촉신고를 하려는 사람: 제1항 단서에 따른 접촉신고를 하는 때

제28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을 “제17조의2제2항”으로 한다.

2의2. 제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u>북한의 주민과</u> <u>회합 · 통신</u> , 그 밖의 방법으로 <u>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u> <u>리 신고하여야 한다.</u>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 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 ----- <u>남북교류 · 협력</u> <u>을 위하여 북한의</u> ----- <u>직접 접촉하려면</u>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u>남북교류 · 협력을 해칠</u> <u>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u> <u>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u> <u>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u>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 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 교류 · 협력의 <u>원활한 추진을</u> <u>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u> <u>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u>	<삭 제>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
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
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신 설>

⑥ (생 략)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삭 제>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
고를 한 사람 또는 같은 항 단
서에 따른 접촉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통일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
에게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
를 한 사람: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후

2. 제1항 단서에 따른 접촉신고
를 하려는 사람: 제1항 단서
에 따른 접촉신고를 하는 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8조의2(과태료) ①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3. <u>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u>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 6. (생 략) ② (생 략)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3. <u>제17조의2제2항</u>----- ----- -----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